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3. 18.(수)
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전문위원 윤주현

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1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3. 5.
- 회 부 일 : 2026. 3. 17.

2. 제안이유

- 급변하는 사회·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결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민생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○ 기 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1071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1073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3567)
- 입법예고(2026. 1. 20. ~ 2026. 2. 9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금산군수가 제출한 「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」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- 약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, 시행하고 있으며, 선거법,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그러나 금산군은 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이라는 상황속에서 긴급한 지역의 경제 위기 없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.
- 또한,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사하게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에서 군민 외에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, 영주자격 취득자도 군민과 동등하게 지급대상자로 명시하고 있고,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9,480만원(결혼이민자 246명, 영주권자 70명 / 2026년 2월말 기준)이 소요됨. 이에 실제 생활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외국인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